

동물복지형 맛있는 닭(육계)을 공급합시다

1960~1970년대 이전의 농촌지역에서는 집집마다 닭을 이삼십 마리씩 키워서 성계이전에는 삼계탕을 만들어 먹고, 성계가 되어 계란을 낳으면 계란으로 반찬을 만들어 먹거나, 시장에 팔아 아이들의 학용품이나 가정용품을 구입하고, 명절 때나 관혼상제에 닭을 잡아서 온 식구들이 모여 닭고기를 먹던 시절이 생각난다. 그때에 닭고기를 너무나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새롭게 떠오른다.

그러나 지금의 닭고기 맛은 옛날에 먹던 그 맛보다 못한 것 같다. 물론 지금은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어서 닭고기 맛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밀식으로 축양하거나 속성으로 키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듦다. 그러나 닭고기는 지금도 온 국민이 제일 좋아하는 육류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닭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외국의 동물복지형 육계 사육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육계농장의 동물복지에 대한 전략 등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1. 국제 동물복지정책 추진 동향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의 농장(산업)동물이란 인간이나 동물의 소비를 위해 고기나 우유, 계란, 가죽, 털 또는 다른 신체 부분이나 생산물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사육되는 동물을 말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과 유럽의 공장형 축산시스템은 빠르게 성장했다. 이 시스템은 많은 수의 농장동물이 창문 없는 축사에 가득 채워져 케이지나 크레이트에서 사육되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공장형 축산은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이러한 육계는 식용을 목적으로 혀름한 축사에 수천마리가 밀집 사육된다. 육계는 케이지에 가두지는 않지만 밀도가 높아 축사의 바닥이 닭

+ 정책 I



김 문 갑 서기관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

+ 정책 I

으로 가득 찬다. 육계는 아주 높은 성장률을 보이나 뼈, 심장, 폐는 그만큼 성장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6주 이하의 유럽의 육계 중 약 25%는 빠른 성장률로 인한 불균형으로 고통받고 있고, 아주 어린 닭들은 백마리 중 한 마리 꼴로 심부전이 원인이 되어 폐사해 영국 정부의 사육가 이드라인에는 육계의 최대 밀사량을 정해놓고 있다. 너무 낮은 기준이지만, 미래의 EU 법에서 육계의 고통이 아주 완화되기를 기대한다.

이와 같이 동물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04년에는 유럽헌법 조약에 동물의 보호·복지 조항을 명문화하였고, 2006년 1월 23일 EU 집행위원회는 「동물복지 제1차 5개년 행동계획(2006~2010)」을 공표·시행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단일직불금 지급기준에 동물복지 반영, 동물복지 품질 표시제(WQ) 도입, 동물복지 연구개발 강화 및 동물실험 「3R」 원칙 준수 촉진 등이다.

「동물복지 제1차 5개년 행동계획(2006~2010)」중 육계의 보호에 대한 주요 내용은 집약적인 육계농장에서 동물복지의 개선과 경쟁의 왜곡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계획안은 ‘브로일러’라고 알고 있는 육계의 사육과 관련되며 100수 이하의 양계시설물이나, 번식을 위한 사육장 또는 부화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우선 모든 시설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으로 생산자는 육계가 깔짚, 물, 사료에 대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에 최소 2번 검열을 해야 한다.

심각한 질병이 있거나 건강이 안 좋은 육계는 즉시 치료를 하거나 도살처분해야 한다.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면 어떠한 외과적 수술도 금지된다. 게다가 생산자는 육계를 사육하는 곳의 상태, 육계의 건강상태, 폐사율 그리고 약물 치료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기록화 해야 한다.

또한 시설물 내의 평방미터 당 사육밀도가 생체중 30kg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평방미터 당 육계의 사육밀도가 생체중 30kg~38kg 사이일 때 생산자는 생산목표와 농장경영 방침뿐만 아니라 시설의 기술적인 세부사항과 그것의 장비를 세세하게 적은 문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양계장에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기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양계장의 습도와 CO₂, NH₃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온열, 냉각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관할 기관은 양계시설을 검열해야 한다. 그리고 검열은 복지문제의 원인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도살장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검열에서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밝혀지면, 생산자는 농장의 육계 사육밀도를 제한당하게 된다.

그리고 WTO 협상 및 양자협상에서 동물복지의 문제를 비교역적관심사항(NTC)으로 의제화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EU FTA에서도 동물복지문제가 의제화 되었다.

2. 우리나라 동물복지정책

우리나라가 동물보호·복지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부터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동물보호법은 88 서울올림픽 전후로 동물보호와 관련한 동물보호단체 등의 비난이 고조됨에 따라 1991년 제정했으나 학대행위의 금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못해 실효성이 반감한 상태다.

실효성이 있는 법 집행을 위해 2002년 9월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동물보호단체에서 개고기 식용금지 명문화, 학대행위의 범위확대 요구 등으로 법개정이 유보되었다.

그래서 2003년 12월 한국동물복지협회 등 6개 동물보호단체와 법 제정 방향 협의를 거쳐 시급한 사항부터 우선 개정하기로 의견 접근이 되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단체는 학대행위의 내용 구체화, 법 위반 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축산단체 등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안을 마련, 부처·당정협의 등을 거쳐 법제처 심사를 완료 후 2006년 9월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안 이외에 2006년 11월까지 5건의 의원입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에 상정됨에 따라 정부안과 의원입법안 5건을 일부 수정하

여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여 2006년 11월 29일 농해수위에서 의결 처리했다.

대안은 정부안에서 빠졌던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 등록제가 도입되고, 중앙정부에서 유기동물 보호조치를 위한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처벌규정도 보완하여 벌금을 최고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6개월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사항을 삭제했다.

법사위에서는 동물학대행위 중 불확정 개념인 고통을 주는 행위, 굶주림과 불가피한 사유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때 소유자에게나 시장이나 군수에게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항을 삭제한 후 2006년 12월 21일 의결하고 본회는 2006년 12월 22일에 의결되었다.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통보 받은 전부개정안을 2007년 1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07년 1월 26일 공포했고,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물의 등록제 도입(제5조),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제6조), 동물에 대한 학대금지행위의 구체화(제7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제14조),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제 도입(제19조), 법령위반에 따른 처벌 강화,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록제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검역원, 축산과 학원이 T/F팀을 구성하여 의원별 입법안의

+ 정책 I

기본취지와 의원별 지적사항 등을 기초로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과정 및 법안발의단계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각종 이해관계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08년 1월 3일 제정 공포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기타 동물의 정의,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민간단체 정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동물보호시설 확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동물보호감시관의 자격, 임무, 위촉 및 직무범위 등이 포함된다.

시행규칙은 동물의 등록방법 및 등록사항 등,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 동반 시 조치사항, 동물학대 행위 중 수의학적 처치 등 정당한 사유,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 등록절차,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그밖에도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 등 농림부고시 5건을 제정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제·개정을 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동물운송규정을 제정하여 육계 등 동물의 운송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농장동물인 소, 돼지, 닭, 오리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운송 중에 있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운전에 유의할 것, 사용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병들거나 어린 동물 및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새끼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해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등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동물 운송 시에는 동물의 종류와 크기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동물별 운송밀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차량에 허용된 적재중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돼지, 닭, 오리는 표준의 20% 범위 내에서 혹서기에는 증가, 혹한기에는 감할 수 있다.

〈표 1〉 동물별 운송밀도 기준(닭·오리)

① 닭

구분	소요면적
병아리	21~25cm ² /수
1.0kg 미만	180~250cm ² /kg
1~<2kg	160~210cm ² /kg
2~<3kg	170~230cm ² /kg
3~<5kg	115cm ² /kg
5kg 이상	105cm ² /kg

② 오리

구분	소요면적
새끼오리	23.1~27.7cm ² /수
1.0kg 미만	198~255cm ² /kg
1.0~<2.5kg	193~235cm ² /kg
2.5~<3.5kg	188~245cm ² /kg
3.5kg 이상	>200cm ² /kg

동물복지는 개별농가수준에서는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국가, 국제적, 산업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형 동물복지 축산모델의 현장적용을 위한 시범농장을 2011년부터 조성하도록 유기축산농가 등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관행축산농가와 비교모델을 설정해 기술적 타당성·경제성, 정책지원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2008년도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동물보호 홍보·교육을 위한 예산(8억원) 및 인력(2명)을 확보했다.

3. 향후 육계 등 농장동물에 추진방향

OIE에서는 2010년까지 축산 시설·사육관리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국이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국내 여건에 맞는 국제규범이 마련되도록 OIE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제·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수용 가능한 분야는 국내 제도로 수용하되, 수정해서 수용하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은 변경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생산자와 관련업자 그리고 소비자도 동물복지축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적합한 동물복지표준을 마련하여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동물복지는 개별농가수준에서는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국가, 국제적, 산업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형 동물복지 축산모델의 현장적용을 위한 시범농장을 2011년부터 조성하도록 유기축산농가 등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관행축산농가와 비교모델을 설정해 기술적 타당성·경제성, 정책지원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무쪼록 동물복지형 맛있는 닭고기 공급이 계속 늘어나 육계산업이 장대하게 발전하여 우리나라 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기를 기원한다. 